

라벨프린터 풀 서비스 계약서

홈버 주식회사

주식회사 빅솔론

- 사정리의 결정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다. 본 계약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- 라.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각 당사자는 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사유 외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손해배상)

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13 조 (양도금지)

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14 조 (관할 법원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제 15 조 (기타)

-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,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,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,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.

이상의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, "홈넘버"와 "빅솔론"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

2020년 04월 24일

"홈넘버"

홈넘버 주식회사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6
메모빌딩 5층
대표이사 조 남 섭



"빅솔론"

주식회사 빅솔론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20
7~8층
대표이사 김 장 환

